

보안서약서(비밀발간업체 등 용역업자)

본인은 년 월 일부터 용역 계약 완료시까지 중소기업부 () 용역계약(업무위탁 등)을 함에 있어 제한구역인 청사출입과 보안이 요구되는 비밀 및 비공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.

1. 본인은 비밀 및 비공개 사항의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소관업무가 중소기업부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하고 일체 함구할 것을 서약한다.
2.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용역업무수행 중은 물론 용역업무가 종료된 후에도 알게 된 비밀 및 비공개 사항을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.
3. 본인이 비밀 및 비공개 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. 단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.

 년 월 일

서약자	소속	직급	생년월일	
		직위	성명	(인)

서약집행자	소속	직급	생년월일	
		직위	성명	(인)